



제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용암천(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 제안연월일 : 2024. 11. 12.
- 제출자 : 남양주시장.

2. 제안이유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용암천(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체육과

3. 주요내용

- 목적 :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도모
- 위치 : 퇴계원읍 퇴계원리 364-2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000㎡,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등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계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금액	1,600	-	1,560	40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구 분	연도별 소요액 (단위: 천원)			
	합 계	2025년	2026년	향후
시비	1,600	40	1,560	-

■ 추진현황

- 2024. 4. 18. : 경기도 하천과 사용조회 요청(道→市)
- 2024. 4. 29. :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 건의(퇴계원읍→체육과)
- 2024. 5. 17. : 경기도 하천과 사용조회 검토의견 회신(市→道)
- 2024. 8. 5. : 경기도 하천과 주최 하천정비, 체육시설 등 현장확인
- 2024. 10. 15. : 용암천 지방하천정비 관련 검토의견 요청(道→市)
- 2024. 10. 17. : 용암천 지방하천정비 관련 검토의견 회신(市→道)

○ 향후 추진계획

- 2025. 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5. 3. : 하천점용, GB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 완료
- 2025. 4.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5. 5.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4. 검토의견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용암천(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정 장소가 별내역에서 오기 힘들고 퇴계원 중심부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지대가 낮아 폭우 발생시 침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시장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려면 법 제1

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의 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까지 시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부개정 2022.9.19.>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전부개정 2022.9.19.>



제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 제안연월일 : 2024. 11. 12.
- 제출자 : 남양주시장.

2. 제안이유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 ----- 체육과

3. 주요내용

- 위치 : 화도읍 차산리 183-2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3,000㎡, 풋살구장(50m×32m/그라운드골프장 겸용), 소공원,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0.
- 소요예산

(단위:천원)

	계	부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기타
금액	1,300	-	1,130	50	철거비 120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구 분	연도별 소요액 (단위: 천원)			
	합 계	2025년	2026년	향후
시비	1,300	1,300	-	-

■ 추진현황

- 2024. 2. 23. : 주민대표 의견수렴(1차)
 - 풋살장(그라운드골프장 겸용),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
- 2024. 3. 26. : 주민대표 의견수렴(2차)
 - 풋살장(그라운드골프장 겸용), 주차장, 소공원 조성 요청
- 2024. 4. 2. :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 건의사항 제출(화도읍→체육과)
 - 차산리 게이트볼장 철거 및 풋살장 조성
 - 잔여 부지 활용 공원 조성
- 2024. 10. 18. :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 향후 추진계획

- 2025. 1. ~ 3. :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
- 2025. 4. ~ 5. : 행정절차 진행(국유지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가설건축물 신고)
- 2025. 6. ~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기존 축구장을 개선하여 그라운드골프장을 겸용하는 풋살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사업부지 및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방문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효율적인 부지 활용계획을 통해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시장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려면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부개정 2022.

9.19.>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전부개정 2022.9.19.>